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GID-EA, Negotiated Agreements
책임 부서: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Employee and Retiree Service Center

메릴랜드 공립학교 시스템/공교육 기관 내 병가 시간 전 환

Transfer of Sick Leave within the Maryland Public School System

I. 목적

MCPS 로 이전하거나 MCPS 에서 이전하기 위해 개인의 미사용 병가 잔액을 보고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MCPS 가 직원 계정에 적립하기 위해 허용하는 병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II. 정의

이 규정의 목적에 따라, *Maryland 공립학교 시스템(Public School System)*의 정의는 공립학교 연령의 아동을 교육하는 모든 기관 및 시스템입니다.

III. 행정 절차

A. 다른 공립학교 시스템/공교육 기관으로의 병가 전환

1. 직원이 직원이 MCPS 를 떠나 다른 메릴랜드 공립학교 시스템에 고용된 경우, 전직 MCPS 직원은 새로운 Maryland 공립학교 시스템에 MCPS 에 고용되었던 것을 알릴 책임이 있으며 *Maryland 규정 (COMAR 13A.07.03.02)*에 따른 공립학교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미사용 병가 전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전직 직원 또는 Maryland 주의 다른 공립학교 시스템의 요청을 받을 경우, 직원 및 은퇴자 서비스 센터(Employee and Retiree Service Center-ERSC)는 미사용 병가 잔액을 몇 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해고된 직원이 해고 수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해당 직

원에게 적용되는 협상 계약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직원은 누적된 병가 시간의 일부에 대해 현재 급여율로 해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B. MCPS 으로의 병가 시간 전환

1. MCPS 로의 고용 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MCPS Form 430-62, *누적 병가 양식(Transfer of Cumulative Sick Leave)*을 받습니다. 이 양식은 직원이 작성하여 직원이 떠난 Maryland 공립학교 시스템에 전달합니다.
2. 완료된 양식 MCPS 양식 430-62, *누적 병가 양도(Transfer of Cumulative Sick Leave)*를 받으면 ERSC 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고된 미사용 누적 병가 시간을 추가합니다:
 - a) 직원이 다른 Maryland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MCPS 로 직접 오는 경우 병가 전환이 허용됩니다.
 - b) 최대 100 일(800)시간의 누적 병가 잔액을 MCPS 고용 기간 동안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 이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 크레딧 시간에 대한 요청은 ERSC 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 재무 책임자, chief financial officer 가 내립니다.
 - d) MCPS 퇴직 시 MCPS 는 다른 고용주로부터 양도된 휴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환된 병가시간은 남은 병가시간을 지급하기 전에 남은 병가시간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직원이 MCPS 근무 중 이전된 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규정 변경사: 구 규정 No 430- 5, 년 월 일, 1982년 10월 개정; 1985년 9월 개정; 1988년 8월 검토; 1993년 9월 7일 개정; 1995년 8월 21일 개정; 1006년 7월 31일 개정; 2024년 8월 27일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기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l@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l@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하십시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하십시오.